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양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원양어선 안전펀드 자금조성 방법 마련 등)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내 규정 정비(제5조, 제6조 삭제)
- 나. 법 제26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인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성 방법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 다.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를 받고 신고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단서를 과태료 부과기준에 추가함(안 별표4 라목 단서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사업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와 정부 지원비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의2	250	350	500
--	----------------	-----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 위원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u> <u>②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u>	<u><삭 제></u>

간사는 원양산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 심의회는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삭 제>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

사업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 등의 규모와 정부 지원비
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연 락 처	(044) 200 - 5366